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27호 2015. 4. 9. (목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2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87차) 2
- 하동군 고시 제2015-24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6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312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12
- 하동군 공고 제2015-321호 2015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안내 · 14
- 하동군 공고 제2015-323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7
- 하동군 공고 제2015-335호 옥중면 법대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 33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37
공고 제2015-3호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15-22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87차)

우리군 도로명주소 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27.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진교면 관곡길 45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3.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5-2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87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27.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주교로 17-17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3.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5-22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87차)

우리군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27.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부용길 8-9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3.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하 동 군 공 보

(5) 제 427 호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길 4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길 45-1	20150327	20070618	관곡천에관모양의바위가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길 4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길 45	20110729	20070618	관곡천에 관모양의 바위가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07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주교로 17-17	20150327	20070618	주교천을따라이어지는도로로서 시설명에서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025-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317-16	20150327	2007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 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49-5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부용길 8-5	20150327	20070618	연꽃을 상징하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부용길 8-9		20150327	20070618	연꽃을 상징하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430-2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가평길 89	20150327	20070618	가동이란 그 아름다운 음향이 이곳을 벗어나지 않는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화신리 38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800-66	20150327	20070618	황천과옥종의경계지점에있는재로 서재를넘을때산모퉁이를돌고돌아 넘는다고해서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20-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86-12	20150327	20080402	옥종면의중심도로로서 옥종중앙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40-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안길 60-2	20150327	20080402	옛날부터전해온이름청룡안길의 줄임말로 청안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산 81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094-56	20150327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산 10-5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1054-19	20150327	20090702	사천시의곤명면과하동군의북천면 의척자를혼용하여곤북로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94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97-29	20150327	20090702	삼신봉과산청군과연결되는 삼신봉터널 이름 반영	

하 동 군 공 보

(6) 제 427 호

하동군 고시 제2015 - 24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04월 06일

하 동 군 수

□ 신설 도근점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3030	적량면 동리	178292.75	271407.04		
3031	옥종면 정수리	184386.54	280397.25		
3032	옥종면 정수리	184331.31	280480.01		
기 준 점 명		중 부 원 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하동군청 열린민원실 (055-880-2091)			
비 고		지적도근점 신설			

하 동 군 공 보

(7) 제 427 호

□ 복구 도근점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3	하동읍 광평리	174202.60	267647.49		
25	하동읍 읍내리	174562.22	268298.24		
35	하동읍 광평리	174073.20	268325.75		
37	하동읍 읍내리	174183.81	268571.06		
53	하동읍 목도리	173014.29	270226.83		
71	하동읍 읍내리	175181.42	267571.79		
81	하동읍 읍내리	174904.48	267924.85		
94	하동읍 화심리	177075.99	265173.17		
103	하동읍 두곡리	176864.84	267085.32		
104	하동읍 두곡리	177047.60	267153.84		
1253	북천면 화정리	182406.18	279301.16		
1254	북천면 화정리	182333.84	279320.80		
1903	북천면 직전리	178314.21	281448.27		
2337	북천면 서황리	181745.44	279935.94		
2452	북천면 직전리	179447.52	280637.48		
2453	북천면 직전리	179425.94	280869.13		
기 준 점 명		중 부 원 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하동군청 열린민원실 (055-880-2091)			
비 고		지적도근점 복구			

하 동 군 공 보

(8) 제 427 호

□ 폐기 도근점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9	하동읍 읍내리	174665.74	267493.01		
12	하동읍 읍내리	174800.36	267472.83		
13	하동읍 읍내리	175162.21	267428.04		
16	하동읍 두곡리	175698.15	267349.12		
19	하동읍 화심리	176058.04	266923.37		
20	하동읍 화심리	176082.07	266614.58		
21	하동읍 화심리	176102.27	266577.72		
28	하동읍 광평리	174478.12	268237.05		
45	하동읍 비파리	174989.36	268928.77		
47	하동읍 비파리	174946.30	269191.75		
56	하동읍 읍내리	175068.11	268097.94		
73	하동읍 읍내리	175108.15	267667.67		
74	하동읍 읍내리	175074.55	267697.32		
83	하동읍 읍내리	174825.16	267994.74		
84	하동읍 읍내리	174929.97	268018.17		
86	하동읍 흥룡리	182072.25	265475.77		
88	하동읍 흥룡리	180318.67	265530.62		
89	하동읍 흥룡리	180300.77	265613.85		
90	하동읍 흥룡리	180363.99	265498.02		
106	하동읍 두곡리	177304.06	267269.42		
127	하동읍 흥룡리	179779.73	263476.63		

하 동 군 공 보

(9) 제 427 호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128	하동읍 흥룡리	179705.63	263485.75		
129	하동읍 흥룡리	179613.86	263495.93		
142	하동읍 비파리	173922.54	269228.22		
143	하동읍 비파리	173716.78	269750.72		
158	하동읍 목도리	171907.19	271362.96		
160	하동읍 신기리	172385.26	271123.40		
168	하동읍 신기리	173431.31	270515.40		
1953	하동읍 읍내리	174880.78	268482.78		
2048	하동읍 화심리	176060.89	266700.19		
2055	하동읍 화심리	176525.71	265506.29		
2056	하동읍 화심리	176485.38	265433.26		
2060	하동읍 화심리	177067.79	264919.17		
2061	하동읍 화심리	177164.56	264831.80		
2071	하동읍 흥룡리	179347.83	263497.23		
2072	하동읍 흥룡리	179494.31	263505.05		
2073	하동읍 흥룡리	179619.62	263509.01		
2074	하동읍 흥룡리	179773.78	263490.34		
2426	하동읍 비파리	174160.97	269514.05		
2427	하동읍 비파리	174064.88	269300.55		
1258	북천면 화정리	183130.90	278082.35		
1262	북천면 직전리	179341.83	279838.85		
1263	북천면 직전리	179569.22	280109.67		

하 동 군 공 보

(10) 제 427 호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1264	북천면 직전리	179570.48	280270.67		
1265	북천면 직전리	179566.27	280369.76		
1266	북천면 직전리	179600.67	280503.52		
1268	북천면 직전리	179726.14	281138.18		
1269	북천면 직전리	179869.51	281181.17		
1270	북천면 직전리	180034.44	281140.26		
1285	북천면 옥정리	179836.51	282241.65		
1295	북천면 직전리	179869.49	281181.46		
1296	북천면 직전리	179726.08	281138.51		
1297	북천면 직전리	179652.17	281064.26		
1300	북천면 직전리	179600.43	280503.38		
1301	북천면 직전리	179570.23	280270.53		
1302	북천면 직전리	179568.94	280109.51		
1303	북천면 직전리	179570.62	279884.53		
1305	북천면 직전리	179485.38	279649.06		
1306	북천면 직전리	179542.99	279515.52		
1307	북천면 직전리	179406.67	279586.13		
2176	북천면 화정리	182573.31	278516.92		
2288	북천면 화정리	183362.34	278643.58		
2289	북천면 화정리	183315.21	278600.38		
2290	북천면 화정리	183129.47	278429.88		
2304	북천면 화정리	182203.19	278367.72		

하 동 군 공 보

(11) 제 427 호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2305	북천면 화정리	182309.87	278474.97		
2306	북천면 화정리	181866.22	278295.50		
2307	북천면 화정리	181928.37	278324.17		
2308	북천면 화정리	181962.08	278405.51		
2309	북천면 화정리	182063.51	278467.80		
2310	북천면 화정리	182116.65	278572.93		
2311	북천면 화정리	182160.23	278611.08		
2312	북천면 화정리	182204.18	278630.62		
2315	북천면 서황리	181308.62	280160.62		
2316	북천면 서황리	181230.22	279951.85		
2459	북천면 직전리	179858.93	281296.52		
기 준 점 명		중 부 원 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하동군청 열린민원실 (055-880-2091)			
비 고		지적도근점 폐기			

하 동 군 공 보

(12) 제 427 호

공고 제2015-312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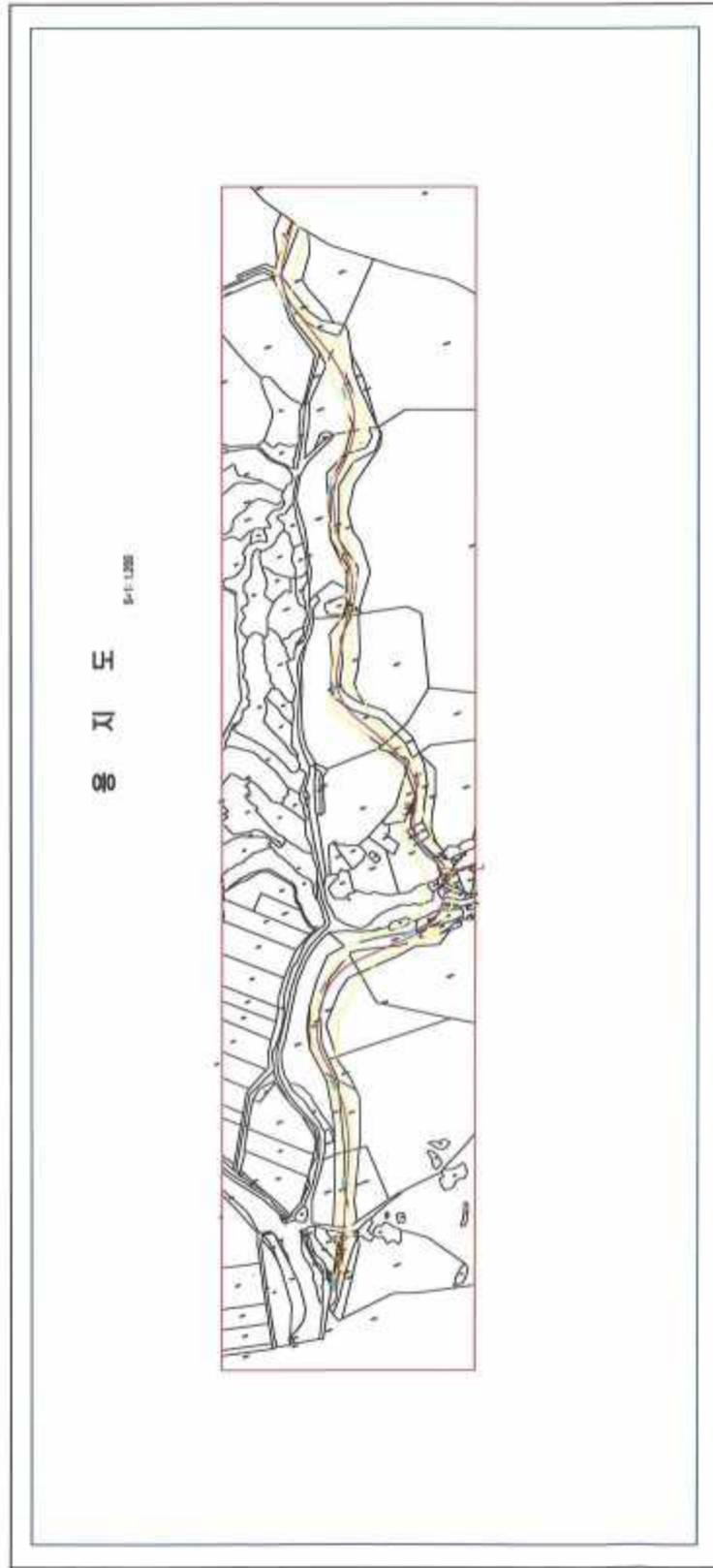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하동군수 [인]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적량면	리도	죽명선 (죽치 ~ 명천)	209	우계리 산 272 -2	우계리 산 253 -4	1.186	공드림재	8.0	8.0	공드림재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

- 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



하동군 공고 제2015 - 321호

2015년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공고

평생학습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관내 학습기관, 시설,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프로그램 및 공통의 주제에 관심 있는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6.

하 동 군 수

1. 공모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 사업 기간 : 2015. 6. 1 ~ 11. 30
- 대상 지역 : 하동군 관내 기관 및 단체
- 대상 사업별 지원액
 - 평생학습 프로그램 : 1개 프로그램 당 2,000천원 이내
 - 평생학습 동아리 : 1개 동아리 당 1,000천원 이내
- 지원 분야 : 학습활동에 필요한 강사비 교재 및 재료비, 운영비 등
- 지원 조건 : 지원액의 20%이상 대응 투자한 기관 및 단체

○ 공모 분야 및 프로그램 내용

구 분	분 야 별	주요 프로그램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영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 의식 교육과정 개발 ▪ 아동 및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 건강한 가정 육성 ▪ 자연 생태 및 환경 의식 고취 프로그램 ▪ 주민자치의식 강화 프로그램 ▪ 학습문화조성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아동 학습 의욕 고취 프로그램 ▪ 노인 자활 의식 고취 프로그램 ▪ 저소득층 직업교육 프로그램(자격증 취득) ▪ 장애우 성장지원 프로그램 ▪ 다문화 가정(외국인, 결혼이민자) 프로그램
	지역 특화 및 정체성 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학 관련 프로그램(지역문화탐방, 역사) ▪ 지역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학습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목도모가 아닌 특정 목적에 의해 자발적 이고, 정기적으로 학습모임 조성

2 응모(신청) 자격

- 평생학습 프로그램 : 하동군 소재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 비영리 법인
- 평생학습 동아리
 - 하동군 관내 소재지를 둔 친목도모와 구별되는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
 - 최소 10인 이상 회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 학습활동을 가지며 월회비로 운영되는 자발적인 학습 동아리

※ 학습동아리의 개념 : 공통의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학습과 토론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학습 공동체

3. 지원 제외 대상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
- 일회성 행사 및 여행(관광)성 프로그램
- 학자금, 성금, 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사업
- 조직, 단체 구성원의 단합을 위한 회식 등 내부 행사
- 동일내용으로 사업비의 일부나 전액을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경우
- 후보자 지지, 낙선운동,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 3년 연속 본 사업에 연속 선정된 기관 및 단체
- 지역사회 환원(봉사)행사가 저조하거나, 군민에게 혜택이 없는 경우

하 동 군 공 보

(16) 제 427 호

4. 응모 서류(신청서 등) 교부 및 접수

- 접수 기간 : 2015. 4. 6(목) ~ 4. 24(목) / 근무시간 내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하동군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http://educity.hadong.go.kr>)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 당일 소인 분까지 유효함
- 접수 장소 및 문의처 : 하동군청 행정과 평생학습부서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 : 667-805)
- 전화 번호 : 055) 880-2184

5. 제출 서류

- 평생학습 프로그램
 -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기관(단체) 소개서 1부.
- 평생학습 동아리
 -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학습동아리 소개서 및 회원명부 각 1부.

6. 심사·선정 및 통보

- 심사, 선정 기준
 - 1기관(단체)당 1프로그램 지원 원칙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지 않는 단체 우선 지원
 - 일회성, 오락성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건전한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우선
 - 사업계획의 실효성, 학습내용의 독창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프로그램 수행능력
- 심사 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결정
- 결과 통보 : 선정 기관 및 단체별 개별 통보

7.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사업평가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교부 신청에 의한 지급
 - ※ 학습동아리는 교부 신청서 제출안함- 하동군 직접 예산 집행
- 지원금 정산, 사업평가
 -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및 추진실적 보고서로 평가
 - 정산보고서 및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8. 기타 사항

- 본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관, 단체 등은 우리 하동군의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활동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0조, 제42조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 우수프로그램 및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동아리(기관, 단체)는 당해년도 지원불가

2015년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추진기간 :

4. 추진계획

○ 교육목표 :

○ 교육주제 :

○ 교육장소 :

○ 교육대상 :

○ 교육인원 :

○ 강사(소속) :

○ 세부내용

회차	일자	주요내용	교육시간	비고

【작성방법】

- 1) 프로그램 개요는 양식에 맞게 교육 목표, 주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2)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시 위 양식을 복사해서 추가 작성

5. 예산 집행계획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합계	지원금	자부담		
합 계				-	
강사비					
교재비					
운영비					
기 타					

【작성방법】

- 1) 프로그램 별로 예산항목을 강사비, 교재비, 운영비 등 산출내역을 상세히 기재
- 2) 집행단가가 드러나도록 산출내역은 계산식으로 기술

6. 기대효과

-
-
-

기관 (단체) 소개서

[○○○○기관(단체)명(예시)]

주 소 및 연 락 처	○ 주소 : (우편번호 -)	
	○ 전 화 :	○ 담당자 :
	○ FAX :	○ e-mail :
	○ 홈페이지 :	
설립목적	○ ○	
연 혁	○ ○○○ 창립 ○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 회원수 : 명	○ 직원수 : 명
기구현황	조직도 작성	
2015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사업수익(%), 기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평생학습 관련사업만 기재(사업실적 : 사진첨부) ○ ○ ○	

○ 2014년도 활동관련 사진

2015년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기간 :
4. 추진계획

일정	항목	세부내용	비 고

【작성방법】 항목(내용), 방법, 참여자 수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소요예산 및 집행계획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합계	지원금	자부담		
합 계				-	
강사비					
교재비					
운영비					
기 타					

【작성방법】

- 1) 예산항목을 강사비, 교재비, 운영비 등 산출내역을 상세히 기재
- 2) 집행단가가 드러나도록 산출내역은 계산식으로 기술

6. 기대효과

-
-

학습동아리 소개서

동아리명		소속기관 (단 체)	
설 립 일		회 원 수	
대 표 자 성 명		대 표 자 연 락 처	
동 아 리 분 류	<input type="checkbox"/> 가정생활교육 <input type="checkbox"/> 취업·직업관련 <input type="checkbox"/> 교양·취미관련 <input type="checkbox"/> 자격증취득 <input type="checkbox"/> 국제문화이해 <input type="checkbox"/> 예술·문화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기타()		
모임배경 및 활동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 배경 ○ ○ ○ 활동 목적 ○ ○ 		
동 아 리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장소 : ○ 학습 시간 : ○ 주요학습 및 활동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학습 - - ○ 활동내용 - - ○ 활동실적(최근 6개월 내, 사진첨부) <p style="text-align: center;">※ 위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p>		

○ 활동관련 사진

하동군 공고 제2015-323호

하동군 최참관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최참관댁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최참관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최참관댁 입장료는 이 조례 제정(2003. 12. 16 제정)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현 실정에 맞게 입장료를 인상하여 최참관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참관댁의 인근 시설물인 지리산 생태과학관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통합권을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입지가 부족한 지리산생태과학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최참관댁 입장료 인상(안 별표 1)

- 일반(어른)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100% 인상)

나. 지리산생태과학관 관람료와 연계한 통합권 신설(안 별표 1)

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항 삭제(안 제16조)

- 조례 제16조제5항 중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미반영한 조항으로 삭제

라. 일본식 한자, 일본어투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안 제1조, 제2조, 제7조제2항, 제9조,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2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실, 전화880-2384, FAX 880-2369, spook036@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28) 제 427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 관하여”를 “에”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4호 및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9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6
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 8.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제6호, 제7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에 관하여”를 “에”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자에 대해서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운용에 관하여는”을 “운용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삭제한다.

제22조 중 “에 관하여”를 “에”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입 장 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1,500	1,000	2,000	1,400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2,000	1,500	2,600	2,000

※ 개별권 : 최참판댁을 입장하는 경우

※ 통합권 : 최참판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30) 제 427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첨관택 관리·운영에 <u>관하여</u>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첨관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첨관택"이라 함은 최첨관택, 평사리문화관, 드라마촬영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과 전시물품, 담장, 조경수목·전통한옥 체험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등을 말한다. 2. "입장료"라 함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공개 관람외 숙박, 행사장, 촬영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4. "판매시설"이라 함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u>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u>를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u>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u>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한다. 8. "어른"이라 함은 <u>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자</u>로서 제6호, 제7호 이외의 <u>자</u>를 말한다. 9.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뜻</u>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첨관택"이란 최첨관택, 평사리문화관, 드라마촬영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과 전시물품, 담장, 조경수목·전통한옥 체험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등을 말한다. 2. "입장료"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개 관람외 숙박, 행사장, 촬영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4.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u>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u>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u>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u>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한다. 8. "어른"이란 <u>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u>으로서 제6호, 제7호 이외의 <u>사람</u>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p>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① (생략) ② 제1항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u>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에게는</u>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 1. ~ 2. (생 략)
- 3.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자
-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자
-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 7. 하동군민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자
- 8.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
- 9. (생 략)

제13조(관란거부 또는 퇴관) (생 략)

-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생 략)

제16조(위탁관리·운영) ① (생 략)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④ (생 략)

⑤ 위탁 여건상 공개 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의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 2. (생 략)
- 3.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사람
-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7. 하동군민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지참한 사람
- 8.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 9.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란거부 또는 퇴관) (현행과 같음)

-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생 략)

제16조(위탁관리·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용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④ (생 략)

<삭 제>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 동 군 공 보

(32) 제 427 호

[별표 1]

입 장 료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개 인	단 체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600	400
청소년(13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제복 입은 하사관 이하 군인)	800	6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1,000	800

※ 단체 : 20명 이상

[별표 1]

입 장 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개 별 권		통 합 권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3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1,500	1,0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2,000	1,500	2,600	2,000

※ 개별권 : 최첨관택을 입장하는 경우

※ 통합권 : 최첨관택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하동군 공고 제 2015 - 335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옥종면 법대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옥종면 법대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편입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옥종면 법대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3. 사업 기간 : 2015. 4. ~ 2016. 12. 31
4. 보상 대상 : 「옥종면 법대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 구간에 편입 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권리 일체
가, 토 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411-6 ~ 411-8
(편입토지내역 : 별지 첨부)

구 분	공 사 명	사업량(m ²)	사업의 위치	편입토지	편입물건
인공습지	옥종면 법대리 축산밀집 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	인공습지 1식 (6,700m ²)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411-6 ~ 411-8일원	“붙임” 토지내역 참조	위 토지상에 정착된 물건일체

나. 보상계획 공고 통지된 토지 및 물건등에 착오, 누락등이 있을 경우 사실 확인후 정정하고 본 공사의 설계변경등이 있을 경우 편입면적 변경 및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고면적과 편입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금회 누락된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예정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참조(신문게재는 생략)

5. 열람 및 이의 신청

- 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 2015. 4. 6. - 2015. 4. 19.(14일 이상)
-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담당(☎055-880-2564)
- 다. 열람내용 : 편입 토지 및 물건조서는 환경보호과 사무실 비치
- 라. 이의신청 방법 :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은 열람 장소에서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

6.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하 동 군 공 보

(34) 제 427 호

7. 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지급 합니다 .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주는 같은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 업자 를 추천할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또는 하동군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8.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보상액산정 →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보상금지급 →(협의 불성립 시)→수용재결 →보상금공탁

9. 보상금 지급절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절차(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협의기간, 장소,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후 보상 실시 .

- 토 지 : 손실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하동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물 건 : 물건은 권리관계 확인 후 실소유주에게 지급

※ 단 토지 및 물건(주택)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는 해지한 후 계약체결

10.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11. 기타 사항 :

- 토지조서 및 지장물건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주소변동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 등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로 개별통 보를 하지 못한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송달을 대신 합니다 .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우리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담당에 오셔서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하시기 바라며, 열 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시면 토지 및 물건조서대로 보상대상자를 확정하고 손실보상 할 계획입니 다 .

-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담당(☎055-880-2564, FAX055-880-2569)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2015. 4. 6

하 동 군 수

편 입 토 지 조 서

(옥종면 법대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

□ 편입토지내역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면	리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계					6,698	6,698						
1	옥종면	법대리	411-6	답	1,595	1,595	강연수	경남 거제시 옥포동 1289-1 한신아파트 102동 501호				
2	옥종면	법대리	411-7	답	2,582	2,582	강연수	경남 거제시 옥포동 1289-1 한신아파트 102동 501호				
3	옥종면	법대리	411-8	답	2,521	2,521	양영석	경남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642				

하 동 군 공 보

(36) 제 427 호

의 견 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하 동 군 수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공고 제2015 - 3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24일

하 동 군 수 인

1. 지정년월일 : 2012. 03. 12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마을명 : 중서마을
 - 위 치 :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22
 - 규 모 : 숙박시설, 식당, 체험장 등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 미 숙
 - 주 소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55
4. 사업개요
 - 농산촌체험, 단체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
 - 농산촌문화·생태체험 및 문화탐방
 - 농산특산물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 음식물 제조

붙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1부.

하 동 군 공 보

(38) 제 427 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조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지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 가.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 지침 및 기타 지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관리 등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하동군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특정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

- 가. 사업자가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 나. 사업자는 하동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업자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하동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 사업자는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손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마.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지정 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을 하동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등

-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동군수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나. 하동군수는 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 상기사유 이외에도 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하동군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운영조건

가.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1) 만약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하동군수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2) 단, 상기의 사건·사고가 하동군수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1) 마을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입을 수 있는 신체 및 재물손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관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체험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파열로 생긴 손해, 붕괴, 침강 등의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3) 체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4) 가스사고(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시 하동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보험을 가입 그 증서 또는 사본을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 보안경비, 차량비, 통신설비비, 유류비, 가스비, 체험자재비, 제세공과금(전기, 상수도, 정화조 청소료 등) 등은 해당농어촌 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체험(방문)객에게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해당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따른다.

바. 사업자는 체험마을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아.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자격있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자.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윤 소득분배는 마을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하동군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1) 하동군수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마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2) 하동군수는 사업자의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3)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매월 보고하되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40) 제 427 호

별첨1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 교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는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는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는 것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는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는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추는 것
2. 안전 시설 기준	마을공동시설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별첨 2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 다.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않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지정취소		

하 동 군 공 보

(42) 제 427 호

별첨 3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과태료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	40만원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00만원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	30만원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400만원
6.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3항	20만원

비고: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